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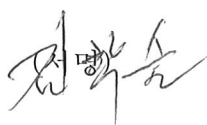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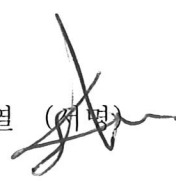


##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

회의명	기금운용심의회	개최일시	2022. 3. 10.(목) 14:00
		장 소	대학본부동 601호
안 건	1.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 심의 2. 기타사항		
참석자수 (인원 수)	○ 위원(5명): 김충석, 김병기, 박미영, 강창우, 김학술		
결석자수 (인원 수)	○ 위원(2명): 오세두, 조용언		
회의내용 및 결과	<p><b>1. 개회선언</b></p> <p>-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인 총장(이하 “위원장” 이라 한다.)이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하여 “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5조 1항” 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개회를 선언하다.</p> <p><b>2.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 심의</b></p> <p>-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 건을 상정하고, 배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개정(안)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.</p> <p>- 위원장은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묻고,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회의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조(구성)을 【별첨 1】 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.</p> <p><b>3. 기타사항</b></p> <p>- 위원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,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함.</p> <p>- 위원장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.</p> <p>-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김병기 위원, 박미영 위원, 김학술 위원을 추천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함.</p> <p><b>4. 폐회선언</b></p> <p>- 위원장은 모든 안건처리 결과를 위원들에게 확인한 후,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폐회를 선언함.</p>		

김 병 기	박 미 영	김 학 술
-------	-------	-------

특이사항			
확 인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장 : 김 충 석  (서명)</li> <li>○ 위 원 : 김 병 기  (서명)</li> <li>○ 위 원 : 박 미 영  (서명)</li> <li>○ 위 원 : 강 창 우  (서명)</li> <li>○ 위 원 : 김 학 술  (서명)</li> </ul>	작성일	2022. 3. 10.(목)
		작성자 (간 사)	김 경 열  (서명)

【별첨 1】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3조(구성)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7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>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※ 내용 변경 (구성인원 변경)</p> <p>※ 내용 변경 (구성인원수 및 조건 구체적 명시)</p> <p>※ 부칙 신설</p>